

의안번호	2217432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7.
추계번호	26F1395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수준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시 상속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, 상속세는 2027년 467억원, 2031년 467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,333억원(연평균 46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단, 동 비용추계는 개정안의 정책효과로 인한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확대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세수효과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상속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30조의2)	-467	-467	-467	-467	-467	-2,333	-46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의2(공익 목적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- 대상: 공익법인에 상속세 재산가액의 10% 이상 출연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※ 단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제외 - 공제율: 10%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0조의2 (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
- 개정안의 세액공제 대상인 공익목적 출연재산과 세액공제 발생규모에 대하여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개정안의 세액공제 대상인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규모는 과세표준에 불산입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의 최근 2년(2023~2024년)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공익목적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 또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의미
 - 향후 공익목적 출연재산 추정규모는 전액 공제요건을 만족한다고 가정
 - 공익법인에 출연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10% 이상을 출연하며,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출연되지 않았다고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피상속인 등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라 피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재산의 출연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, 동 추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개정안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%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등의 경우, 상속세액의 10%를 공제
 - 현행 피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직접 또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경우,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
 - 단, 출연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등과 해당 공익법인 등의 보유지분을 반영하여 지분이 일정수준(5~20%)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
 - 개정안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%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

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, 추가적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의 10%를 세액공제하여 상속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공제대상: 상속세 재산가액의 10% 이상을 공익법인에 직접 또는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
 - ※ 단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제외
- 공제율: 10%

(2) 추계방법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발생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모두 공제 대상이라고 가정하여 공제규모를 추정

- 과세표준 구간별 공익목적 출연재산은 최근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규모 추이와 구간별 분포를 바탕으로 추정
 - 향후 피상속인 등의 공익목적 출연재산 규모는 최근 2년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- 과세표준 구간별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전액 공제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단계에서의 세수효과를 추정
 - 향후 피상속인이 공익목적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, 자기재산의 10% 이상을 출연하여 공제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가정

□ (공익목적 출연재산 현황) 최근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추이 및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

- 최근 5년간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추이는 2020년 859억원에서 2022년 일시적으로 1조 5,35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3년 이후에는 4천억원대 수준으로 발생

[표 2] 공익목적 출연재산 추이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공익목적 출연재산	859	618	15,353	4,957	4,373

주: 공익목적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에 직접 또는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한 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금액을 의미

자료: 국세청 국세통계포털(TASIS)

- (향후 세수효과 추정) 향후 공익목적 출연재산은 최근 2년(2023~2024년)의 연평균 수준인 4,665억원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정
 - 향후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시 공제요건에 맞게 상속재산의 10% 이상 출연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연간 세수효과: 467억원 = 4,665억원 × 10%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수준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시 상속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, 상속세는 2027년 467억원, 2031년 467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,333억원(연평균 46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단, 동 비용추계는 개정안의 정책효과로 인한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확대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세수효과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상속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30조의2)	-467	-467	-467	-467	-467	-2,333	-467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상속인 등의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이 확대될 경우, 세수효과는 추계서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
 - 동 비용추계는 개정안에 따른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으나, 향후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의 출연을 확대

하는 경우, 세수 감소효과의 규모는 추정치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

- 한편, 국내외 선행연구 중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 정책효과를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한 사례 존재
 - 2012년 4월부터 동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¹⁾하는 영국의 경우, 도입당시 제도에 참여하는 상속건수를 연간 50건, 장기적으로는 연간 5,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제하여 연평균 6천만 파운드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²⁾³⁾
 - 박훈 등(2025)⁴⁾에서는 2023년 상속세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의 10~50%의 재산이 공익법인에 출연될 경우를 전제하여 연간 0.2~1,2조원의 세수 감소효과를 추정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

-
- 1) 영국은 2012년 4월 6일 이후 사망한 자가 순자산(Net estate)의 10%를 자선단체에 출연할 경우, 상속세율을 40%에서 36%로 10% 낮게 적용하는 제도를 운용 중
 - 2) HM Revenue & Customs, "Inheritance Tax: Reduced Rate for Estates Leaving 10 Per Cent or More to Charity," 2011.12.
 - 3) 동 추계서에서도 제도의 참여율 증가효과는 향후 "자산가와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상담가들에 대한 홍보에 따라" 달라진다고 명시하며, 참여율 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정방법 등의 설명이 없음(HM Revenue & Customs, 2011.12.)
 - 4) 박훈 등, "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'레거시 텐(Legacy 10)'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-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중심으로,"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연구용역보고서, 2025.11.